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2월 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
 -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
 -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고
 -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
 -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·중·고 학교로 하며(안 제3조)
 -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지원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 노력하여야 하며
 - 학교급식의 재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두고(안 제7조)
 -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내용 등입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인 고규강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
 -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교육감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그 재원으로 도내 초·중·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
- 주요 검토사항으로는
 - 현재 동 조례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15일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에서 동 조례안과 내용을 같이하는 가칭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 청구 중에 있고
 - 2004. 1. 15(수) 11:00에 충청북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임원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민발의안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
 - 교육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(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)
 - 충청북도에서는 교육감이 식재료 구입비의 소요재원을 요청할 경우 추정소요액 년 약151억원(252,000명)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확보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 교육위원이 발의안 동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중인 조례안이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유보하여 병합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기타 우수농산물의 정의,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식재료 공급자 선정 등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도 병합심사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